성주군 참별미소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성주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참별미소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대학 조직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
(안 제4조 및 제7조)

나. 대학의 교육기간, 입학자격, 선발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
(안 제9조～제10조)

다. 졸업생 우대, 사후관리, 사무보조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
(안 제19조～제21조)

라. 대학 운영 시 교육비(강사료, 원고료 등)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22조)

마. 대학의 학생자치회, 총동창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23조)

바. 대학의 교육비 일부 자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2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도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: 5개시군(상주, 의성, 청도, 울진, 칠곡)

다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2013. 08. 12. ~ 2013. 08. 31.)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붙임 1

(4) 전국 관련 조례 제정 및 도내 농업인대학 운영결과 : 붙임 2, 3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는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농업의 양성과 농업인 교육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실시 계획에 의거 운영해 오던 사항을 예산지원 및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법적 뒷받침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

○ 대학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구성, 교수 임명 및 위촉, 교육기간, 입학자격과 선발, 졸업생 사후 관리, 교육비 편성 등 성주군 참별미소 농업인 대학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해 두었습니다.

○ 따라서 우리 군 농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대학설치 조례로써 이를 참고하여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